**장유자이더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칙**

**<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이 모임은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1.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간의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입주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 전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의 시공 및 건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튼튼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시행사, 시공사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명품 아파트를 만든다.

3.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명품 아파트가 되는데 저해되는 부당한 사항이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각종 단체와 상호협력 한다.

4. 협의회 활동은 카페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xigimhae)와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카페 활동은 실명으로 하며 동호수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 3조(사업)**

협의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관련 일체의 사업을 한다.

2. 시행사, 시공사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시 및 불편한 입주 환경을 사전에 개선한다.

3. 입주예정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4.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결속 및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친목사업을 한다.

5. 입주예정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 제2장 회원>**

**제 4조(회원)**

1. 회원의 자격 : 본 협의회 회칙과 사업에 동의하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수 분양자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구성은 하기 4개로 구분한다.

가. 매니저 :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본 카페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 회원이다.

나. 입예협 :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협의회의 임원진으로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협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다. 위임입주민 :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계약서 인증 및 입예협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및 직계 존,비속

라. 입주민 :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계약서 인증한 입주예정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

**제 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협의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투표권은 1세대 당 1명만 가능하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필요 시 납부한다.

3. 회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대내외적인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참여해야 한다.

4. 모든 권리는 위임입주민의 자격을 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5. 입주민은 일부 정보의 접근이나 자격에 제한을 둔다.

**제 6조(회원의 징계 및 탈퇴)**

1. 대내외적으로 협의회에 대한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회원.

2. 협의회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회원.

3. 회원 간의 결속을 저해한 회원

4. 자진탈퇴 또는 징계의 사유로 탈퇴한자는 기 납입한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장 운영위원회 >**

협의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원과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카페매니저), 부회장, 총무, 감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예비 동대표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직책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시행사, 시공사 및 아파트의 모든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회의는 온라인으로 대치할 수 있다.

3. 임시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은 개회 5일 전에 사전 공지하며 긴급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회원투표가 필요한 경우 2/3의 이상 득표로 효력을 갖는다.

6.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회칙이 제정된 2021년 12월 29일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까지로 하며 회원 20인 이상의 해산 요청 시 2/3 득표로 조기에 해산할 수 있다.

7. 운영위원은 정당한 사유나 통지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 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참석 과반수 득표-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2. 총무 :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한다.

3. 카페지기 : 카페 개설한 본인으로 협의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운영위원은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제 8조(운영진 구성과 직무)**

1. 회장 : 협의회를 대표하며, 본 협의회의 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 협의회 운영 및 대외적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회비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 : 회비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여부를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반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5. 카페지기 :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본 카페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 제4장 총회와 예산 >**

**제 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전 주민 투표가 필요한 경우 15일전 공지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후 7일 이전에 공지하여 할 수 있다.

3.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으며, 회원 10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발의 시 5일 전에 공지 후 실시한다.

4. 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정회원의 참석(인원수 제한 없음)으로 성립되며, 총회에 참석한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부회장, 기타 운영위원의 선출

 다. 예산 결산 및 집행 승인

 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의 시행 또는 결산

 마. 장유자이더파크아파트의 발전, 협의회의 이익을 위한 공적인 사안

**제 10조(예산의 확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되며, 특별한 사업계획에 따른 특별모금이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강제로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 11조(의결)**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사하는 것으로 하며, 회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 또한 같다.

**제 12조(의사록작성 및 회비사용 기록 증빙의 보관)**

협의회의 모든 회의 및 제반 업무는 총무가 회의록, 회계장부 등의 기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비 지출 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관하며 운영위원회 요청 시 즉시 공개한다.

**제 13조(회비의 집행)**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2. 전체 공지된 내용으로 협의회의 공적인 활동 시 지출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행사준비물, 우편물, 현수막제작비, 회의 시 음료수 등으로 음주가무는 불가 한다)

3. 운영위원회 회의비용은 월 1회 이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식사비를 지원한다.

4. 시행사, 시공사, 관공서 등 교섭이나 업무 사유로 방문 시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출한다.

5. 회비 지출 시 인정될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회의록에 근거를 명시한다.

**제 14조(성실의 의무)**

협의회의 모든 회원은 성실하게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제5장 재정 >**

**제 15조(회비의 징수 및 관리)**

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모금 공고하거나 공익적 사업으로 찬조금을 모금 할 수 있다.

2. 거출된 회비의 관리는 협의회 총무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관리, 담당한다.

3. 감사는 반기 1회 운영회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카페에 공지한다.

4. 기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비와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 16조(해산의 결의)**

본 협의회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완공 후 공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면 해산한다. 다만, 입주 후에도 필요시 친목목적의 자생단체로 유지할 수 있다.

**제 17조(해산 시 재산의 처분)**

협의회 해산 시 남은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 부칙 >**

**제1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효력 발생)**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협의회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회칙의 개정)**

본 협의회 회칙의 목적은 원활한 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운영회의 의결로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만장일치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결정된 운영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

본 회칙은 2021년 12월 29일부로 시행한다.